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

국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 2. 위성곤의원 등 58인

나. 회 부 일 자 : 2025. 1.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2.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위성곤의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 2인만을 임명한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한 월권행위이자 헌정질서를 흔드는 국헌문란 행위이며, 12·3 비상계엄을 국민이 막아낸 지금의 상황을 무위로 돌리려는 내란 동조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회가 대통령권한대행에게 헌정질서 회복 및 헌법재판

소의 정상화를 위하여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즉각 임명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함.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2024년 10월 17일 임기가 만료된 전임 재판관 3인(이종석·김기영·이영진)은 국회에서 선출(2018. 10. 17)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으로, 국회는 재판관의 궐원에 따른 후임 재판관 선출을 위하여 2024년 12월 26일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을 각각 의결하였음.

그러나,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 2인(정계선·조

한창)만을 임명하였음.

동 결의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회 선출 몫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재량권 없이 형식적인 임명을 하도록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의무로 보아 이를 선택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위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정질서의 회복과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위하여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이 이 결의안의 취지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